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관리시 유의사항〉

- 단체(개인포함) 계약 시 보험목적물 현장실사, 피보험자(주민)의 동의서(청약서) 징구 등 보험가입절차 이행 철저
 - 가입동의서에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 작성 및 현장 확인자 서명여부 반드시 확인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재난복구사업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풍수해보험법」 제34조
 - 국비 및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연금 등은 지원 가능

⊙ **중복조건(기준) : 지원대상 시설물이 동일하여야 함**

(예1) 보험가입 주택·온실 소유자 풍수해 피해 시 ⇒ 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 미지급

(예2) 보험에 가입한 주택(시설부분)이 침수피해 발생시 ⇒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동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예3) 보험에 미가입한 주택(시설부분)이 침수피해 발생시 ⇒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예4) 같은 대지에 온실 3동을 보유한 소유자가 1동만 보험에 가입 후 풍수해 피해 발생
· 보험에 가입한 온실은 보험금 지급(재난지원금 미지급), 보험에 미가입한 온실은 재난지원금 지원

- 국비보조금 지원보험료 비율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집행 철저
- 「풍수해보험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보험계약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방지

〈 **보험료 대납 금지(보험업법 제98조)** 〉

- 보험사(보험모집인)가 자사(自社)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代納)해 주는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98조)

〈 **동일 보험목적물 중복가입 금지** 〉

- 보험에 가입된 동일 보험목적물을 보험계약 기간 내 중복(같은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사) 가입하는 행위 금지
 - ※ (약정서 제8조제3항 단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내에 동일 보험 목적물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계약의 보험료만 정부가 지원

〈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자격 조건에 맞게 보험 가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보험가입(계약)을 하는 피보험자의 자격 적격여부를 반드시 관련부서에 확인
 - ※ 계약기간 내 자격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재가입 시 적용)
- 주택소유자가 주택과 세입자동산으로 이중가입 또는 세입자동산으로 가입하거나, 세입자가 주택소유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소유권 등) 확인

〈 **주택 최소가입 면적으로 일괄계약 지양** 〉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보험목적물(주택, 세입자동산)을 최소 가입면적인 50㎡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 발생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주거용 면적으로 주택 및 세입자동산 보험가입 추진
 -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50㎡로 보험가입

〈 보험목적물만 보험가입 조치 〉

-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단독·공동)으로 등재된 건축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면적)만 보험가입 대상
-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면적)만 보험가입 대상
 - 미 등재 건축물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건축물인지 관련서류(설치시기 및 지역)를 확인하고
 - 현장실사를 통해 가입 대상면적 실측 및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 등 불법 건축물은 제외)인지 반드시 확인
- * 「건축법」 제정(1962년) 이전 또는 1992.2.8~2006.5.9까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주택

—〈주택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건축물〉—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 제외)
- ⊕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등재된 건축물을 불법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구조와 현장실사 시 확인한 주택의 구조가 다른 건축물
 - 철거 후 재건축한 건축물(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다시 등재하지 않은 경우
- ⊕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판매시설 등)로 사용 중인 건축물, 빈집 및 창고·축사 등 부속건축물